

제820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

□ **안건명** :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
□ **심사일** : 2013. 8. 19.

□ **사업개요**

- 사업비 : 400,000천원 (총사업비 4,517억원)
-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300일(10개월)
- 사업내용 :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437만^m³/일
· 중랑 134, 탄천 90, 서남 127, 난지 86

□ **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**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 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○ 용역 필요성 인정 - '12년1월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필요 (T-P 기준 : 2이하 → 0.5이하)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계약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 감 조정 : 374,466천원 (감 25,534천원, 6.4%) - 직접보간법에 의한 효율 조정 (1.3% → 1.36%) - 자문비, 국내외 출장비 등 조정 -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효율 반영 (0.524%)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-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○ 과업내용서 보완 - 용역발주 심의요청서 사업규모와 과업내용서 1페이지 과업개요의 하수처리 용량을 일치시킬 것 - 총인처리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은 별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 지연·중단 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 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 보완 - 사업한계성, 불확실성 등에 대한 리스크 발생요인 예측 및 대응방안을 검토 리스크 관리 계획을 과업내용에 추가

<첨 부>

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확 인 항 목	세 부 내 용
<p>용역시스템</p> <p>8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(첨부) 등록</p>	<p>○ <u>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</u> 및 <u>과업내용서</u>를 <u>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</u></p> <p>※ 기술심사담당관-600호('13.1.14) :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</p>
<p>입찰전</p> <p>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	<p>○ <u>발주부서</u>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<u>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<u>서울시</u> 항목별 세부 평가 <u>기준과</u> 모든사항이 <u>동일한 경우</u>에는 <u>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</u> <p>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97호('13.3.25) : 사업수행능력평가 개정시행</p>
<p>심사 및 심의전 확인</p> <p>3. 유관부서 의견수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	<p>○ 기술용역타당성<u>심사</u> 및 건설기술<u>심의 요청</u> 전 <u>유지관리부서</u> 및 <u>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 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-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<p>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('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</p>
<p>타당성 조사용역</p> <p>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</p>	<p>○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사업의 <u>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
<p>용역준공시</p> <p>1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	<p>○ <u>발주부서</u>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용역보고서</u>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<u>준공시</u>) - <u>전체성과품</u>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<u>준공시</u>) <p>·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</p> <p>※ 시장방침 제135호('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</p>
<p>설계시</p> <p>5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 기술 용역 추진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	<p>○ <u>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</u>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(http://98.33.0.64/gis/index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<p>내진</p> <p>6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</p>	<p>○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</p> <p>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</p> <p><u>서울시 해당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현황 (첨부 #1)</u></p>